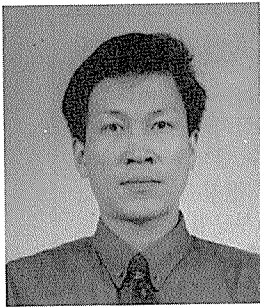


통신사업 제한 완화 건의

—국제 경쟁력 재고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임 호 기
산업전자과/대리

1. 서론

통신사업에 있어 국제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 하느냐, 아니면 외국의 거대 기업에 잠식 당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주저 앉을 것이냐!

통신 사업의 국제 경쟁력 재고라는 대명제하에 추진되고 있는 통신사업의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체신부가 내 놓은 법률 개정(안)을 놓고 지금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7월 29일 입법 예고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기본법의 개정(안)에 대해 우리 진흥회는 이미 관련업계의 의견을 모아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정부 관계기관에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러한 우리의 입장은 이후의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 각부처, 학계, 산업계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부터도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미 대세로 굳어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세계의 통신시장의 변화와 금번 입법 예고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전기통신관련법 개정(안)의 문제점

지금까지의 통신의 역할은 전화를 중심으로 다수의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만으로 충분한 시대였다.

그러나 교환, 전송기술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통신의 기능을 정보통신 위주로 변화시켜 나갔으며 이와 함께 새로운 서비스의 요구와 공급이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의 원활한 수급이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지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업도 이에 맞게 개편되어야 할 것인데, 특히 우루과이라운드와 한·미 통신협상 등의 결과 우리나라의 통신시장 개방이 조만간에 실현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새로운 정보통신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단시일 내에 갖추지 못할 경우 한편으로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어려워질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 통신시장이 선진국 업체에 지배당할 우려가 높다.

또한 통신서비스업이 수출산업으로서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더욱더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존 통신법령들은 '91년에 전기통신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는데 당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지분제한에 관한 조항들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되었다.

특히 유선전화의 경우 대주주의 지분을 10%, 통신설비 제조업체의 지분은 3% 이내로 제한하였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기존의 일반통

신사업과 특정 통신사업을 없앤다고 해놓고 전화(유선) 사업과 비전화(무선) 사업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다.

통신서비스의 경쟁력 재고와 공공성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지분 제한 구조를 통해 접근 한다고 해왔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기간 통신사업자의 지분 제한(전화사업은 금지)을 오히려 설비 제조업체보다 확대한 1/3로 넓혀 놓았다.

설비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데 무엇을 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따랐으며 경쟁력을 재고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세계 통신서비스의 큰 흐름인 국제적 연대, 민간의 책임 경영을 유도하는 민영화, 자유경쟁 등의 일반 경제논리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아니 오히려 경제논리 보다는 내국인 끼리의 적당한 지분배분과 소수 대기업 집단(설비제조업자)의 참여를 배제 하는데 초점을 둔 개정(안)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믿고 있는 듯 하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통신 서비스의 효율 극대화나 통신기기 산업의 발전, 통신 이용자의

편익증진, 나아가 수출산업으로의 도약과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라는 대명제를 달성할 수 있는지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통신 서비스와 같이 공공성이 높고 기술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며 투자 규모가 커서 독점의 경향이 높은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3.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체 지분제한 철폐

전기통신 설비 제조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지분제한 조항은 이번 기회에 마땅히 철폐되어야 한다.

컴퓨터와 통신, TV(CATV 포함) 등의 모든 정보 매체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통합되어 멀티미디어화가 진전되는 시대에 설비 제조와 서비스를 별개로 둔다는 것은 매우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다.

이것은 마치 컴퓨터 공급업자에게는 프로그램인 소프트웨어를 개발도 취급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AT&T, 영국의 BT, 일본의 NTT 등 세계 굴지의 거대 통신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설비와 서비스를 겸업하고 있으며 날로 그 추세가 확대되고 있는 것도 모두 경쟁력 증대를 위해서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지금 우리 통신설비 제조업체가 거대한 중국 시장을 비롯해 베트남, 동유럽 시장 등을 개척하면서 통신 서비스를 겸업하고 있는 기업들에 사업권 확보를 빼앗기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가 우려하는 수직 계열화에 따른 폐단은 시장의 경쟁 여건에 좌우되지 수직계열화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계열화에도 불구하고 독과점이 존재하면 당연히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불공정 거래는 지분제한으로 고쳐질

수 없는 것이며 이는 공정거래법 등의 장치로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수직계열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기술적으로도 통신설비의 발전으로 과거의 통신 서비스를 흡수하는 등 융합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때, 수직계열화는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여 기업의 효율을 제고시키고 경쟁력이 재고 되므로써 국민의 통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등의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불공정 거래의 억제를 위해 설비 제조업체의 지분을 규제하는 것은 달성할 수 없는 목적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업종 전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통신 설비 제조에 전혀 경험이 없는 업체가 통신 서비스업에 참여하는 것과 설비 제조업체가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과의 경쟁력을 예상했을때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4. 전화사업 대주주 지분제한은 완화되어야

전화 사업에 있어 대주주에 대한 지분제한을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 10분의 1로 제한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너무 약하다.

최근 미국은 CATV 사업과 전화 사업의 영역을 없애는 등의 통신 관련법안이 상원까지 통과 되었으며 변화하는 국내의 환경을 볼때에도 유·무선의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 해지고 있는데 유독 전화 사업에 대해서만 지분 규제를 두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못한 조치이다.

공공성의 침해는 지분 구조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성을 위협하는 가격인상이나 수익의 극대화 전략은 지분 구조에 불문하고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시장의 경쟁유발로 해결해야 한다. 오히려 대주주의 지분 제한은 주인있는 책임

경영 체제하에 조속한 의사결정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묶어 버리고 마는 것이다.

통신을 비롯 전력, 철도 등의 공공서비스업을 세계 각국이 민영화 하고 있는 이유는 공공성을 유지시키면서도 민간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분의 엄격한 제한은 책임없는 경영체제와 민간기업의 동기 억제를 유발하는 폐단을 가져오게 된다. 지분 구조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산업에서는 민간기업으로서의 활발한 역동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것이 경쟁력 집중의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공정 거래 차원에서 소유집중의 완화라는 큰 틀이 제시되어야 하고 개별 산업에서는 자유로운 경쟁과 참여가 보장 되어야 한다.

통신서비스가 국가의 전략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5. 부가통신사업자 : 자가통신 설비 및 CATV 전송망 활용케 해야

부가가치 통신사업자가 자가통신설비 및 CATV 전송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을 보면 부가가치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여 부가통신사업 활성화 의지를 어느정도 볼 수 있으나, 기간 통신 사업자로 부터만 설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또한 사업 다각화와 경쟁원리 도입 원칙과는 달리 기존 통신 사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어 부가가치 통신(VAN)사업의 발전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종합유선방송 전송망 사업자 및 자가

전기 통신 설비 제조업자 등으로 부터도 설비를 임차하여 VAN사업을 할 수 있게 함은 경쟁 체제의 확대와 다양하고 높은 품질의 서비스 공급이 촉진될 것이며 이는 VAN 서비스 수요의 증대와 함께 관련된 산업의 발전 등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통신설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6.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설립은 재고돼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설립에 관한 부분이

다. 인간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신정부의 구호와와는 동떨어진 이번의 신규협회 설립 추진에 대해 관련 기업들은 적지 않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전자정보통신산업 관련 단체들이 충분히 설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사한 설립 목적을 가진 협회가 정부 주도하에 새로 설립된다면 협회간의 사업 중복으로 인한 관련업계의 혼선 야기와 설립 분담금 및 회비 등의 재정적 부담 등의 폐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더구나 업계가 원하지 않는 신규협회의 설립을 정부가 법제화까지 하면서 강행하려 한다면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협회 설립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한다.

끝으로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지금 우리는 본격적인 정보통신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과연 무한한 국제 경쟁 체제 속에서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는 터전을 마련 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를 냉정하고도 객관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결정에 대해 후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 이 중요한 시기이다.